

복지이슈 FOCUS

현장공감 경기복지재단

제7호
2021-07

2021. 6.

코로나19 감염병 상황에서 노인학대 대응 이대로 좋은가

유병선 연구위원(bsyoo@ggwf.or.kr)
장백산 연구원(san0277@ggwf.or.kr)

목차

- I. 서론
 - II. 코로나19 상황에서 노인학대 발생 현황
 - III. 코로나19 상황에서 노인학대 대응 현황
 - IV. 정책 제언
- 참고문헌



경기복지재단
GYEONGGI WELFARE FOUNDATION

■ 연구진

연구책임 | 유병선 경기복지재단 연구위원

공동연구 | 장백산 경기복지재단 연구원

■ 복지이슈 FOCUS는 빠른 복지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주요현안 및 이슈를 발굴하기 위하여 복지 이슈를 진단하고, 정책을 제안하기 위해 작성된 자료입니다.

■ 본 보고서는 경기복지재단의 공식적인 입장과 다를 수 있으며, 본 보고서의 내용과 관련하여 의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Tel : 031-267-9394 Fax : 031-898-5935 E-mail : bsyoo@ggwf.or.kr

■ 2020년 코로나19 감염병 상황에서 노인학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남

- 코로나19 감염병이 대유행을 한 2020년에는 2019년 대비 노인학대가 280건 증가하여, 2018년 대비 2019년 증가폭의 약 21배 증가(건수로는 30% 증가)
 - 코로나 19 상황에서 학대가 급증한 원인은 외출 등이 제한되면서 좁은 공간에 가족 구성원들이 함께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져 부정적 감정이 증폭되었기 때문
 - 또한, 감염병으로 인해 노인요양시설이나 요양병원에 면회가 제한되면서 종사자들의 학대 민감성 저하도 시설 학대가 급증한 원인으로 설명되고 있음

■ 코로나19 감염병 상황에서 노인학대발생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입하는 노인보호전문기관 전문가들의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큰 것으로 나타남

- 코로나19 감염병 상황에서 급증한 노인학대 개입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코로나 19 감염병 상황인 만큼 노인학대 개입 방식 역시 변화되었음
 - 노인학대 개입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급증한 노인학대건수 만큼이나 노인보호전문기관 종사자들의 노인학대개입 업무가 변화되고 과중된 것으로 나타남
 - 노인학대 개입은 그 전에도 노인학대 특수성으로 인해 업무가 어려웠는데, 코로나 19로 인해 1) 가정 및 시설 방문, 2) 서비스 제공 연계 3) 응급 쉼터 입소 4) 노인학대 예방 교육 실시 등에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감염병 상황에서의 노인학대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제언

- 감염병 상황에서의 노인학대 개입을 위한 지원 및 정책 필요
 - 즉시 격리가 필요한 학대피해노인의 즉시 입소가 가능한 시스템 구축
 - 행정지원인력, 차량지원, 초과근무수당 등 실질적인 지원 방안 필요
 - 노인학대예방교육 실시는 감염병 상황을 고려해서 유연한 지침 필요
 - 서비스연계가 어려운 상황인 만큼 사후관리를 위한 별도 사업을 추진
 - 감염병 상황에서 학대예방을 위한 경기도 차원의 모니터링 및 유관기관 협조 강화

I 서론

■ 감염병과 노인학대

- 감염병은 우리사회의 많은 변화를 야기하고 있으며, 노인들의 생활에도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
 - 60세 이상 고령자들의 COVID19 감염에 의한 치사율은 자동차 사고에 의해 사망할 확률보다 50배 이상 높게 나타날 정도로(Levin, Hanage, Owusu-Boaitey, Cochran, Walsh, & Meyerowitz-Katz, 2020) 감염병은 노인의 사망률을 높임
 - 또한, 팬데믹 대응조치로 인한 사회적 접촉제한의 장기화는 고령자의 신체 및 정신건강에 매우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함. 예를 들면, 고령자의 37.1%가 우울과 불안 등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8.1% 정도는 스트레스를 매우 극심하게 겪는 것으로 나타남(Wang, Pan, Wan, Tan, Xu, Ho, & Ho, 2020)
 - 사회적 접촉 제한은 지역사회에서 COVID19의 확산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는 반면에 고령자의 심신의 건강을 악화시키는 주요인으로 작용(Levkovich, Shinan-Altman, Essar-Schwartz, & Alperin, 2021)
- 감염병으로 인한 노인생활의 큰 변화 중에 하나가 바로 노인학대¹의 증가임
 - 감염병 상황에서는 노인방임 또는 학대와 같은 가정폭력이 증가되는 것으로 많은 연구를 통해서 증명되었음. 경기도 노인학대를 살펴 보면, 2018년 대비 2019년은 13건이 증가한 것에 비해 2020년은 코로나19 상황에서는 전년대비 노인학대 건수가 270건이나 급증하였음(경기도노인보호전문기관, 2021)
 - 미국 오레곤 주 포틀랜드, 텍사스 주 샌 안토니오, 앨라바마 주 제퍼슨 카운티에서는 2020년 3월 Stay-at-home 기간 동안 각각 가정폭력 신고 횟수가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하여 각각 22%, 18%, 2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Boserup et al., 2020). 또한 미국 텍사스 주 댈러스 시에서 2020년 3월 말 Stay-at-home 단계에서 아동학대, 노인학대 등의 가정폭력범죄 발생 빈도를 분석한 Piquero et al.(2020)의 연구에 따르면 재택기간 동안 노인학대 등 가정폭력범죄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음

1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으로 말한다 (노인복지법 제1조 제4호)

■ 연구의 목적

- 본 연구는 코로나19 감염병 전후로 경기도 노인학대 현황을 시계열로(2018~2020년) 비교·분석하고 감염병 상황에서의 노인학대 대응체계 및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연구의 내용과 방법

○ 연구 내용

- 코로나19 감염병 전후 경기도 노인학대 현황 비교
- 코로나19 감염병 상황에서 노인학대 대응방식 분석
- 감염병 상황에서 노인학대 예방 및 개입을 위한 정책 대안 제시

○ 연구 범위

- 공간적 범위 : 경기도 31개 시군
- 내용적 범위 : 2018~2020년 노인학대 발생 현황 및 4개 경기도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종사자 대상으로 코로나19 감염병 상황에서의 노인학대 대응방식
- 시간적 범위 : 2018~2020년

○ 연구 방법

- 노인학대현황 통계 분석 : 경기도 노인보호전문기관의 협조를 통해 2018~2020년 경기도 노인학대 발생현황 통계 분석(빈도, 백분율 분석)
- 코로나19 감염병 상황에서의 노인학대 대응 체계에 대한 전문가 인터뷰 : 경기도내 4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전문가 대상으로 감염병 상황에서의 노인학대 대응 방식 인터뷰

〈표 1〉 인터뷰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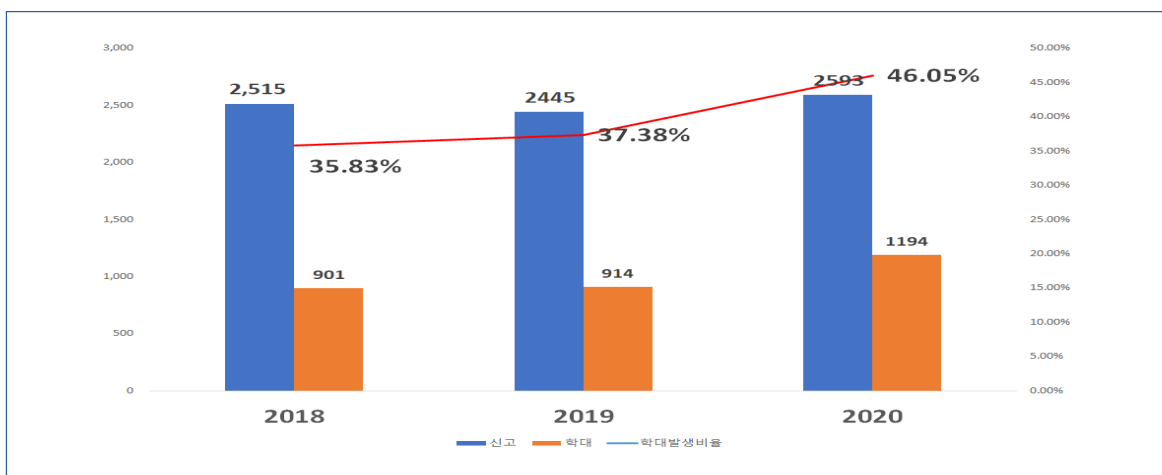
| 구분 | 기관명 | 진행일시 | 대상자 | 성별 | 직위 |
|----|--------------|----------------|-----|----|----|
| 1차 | 경기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 2021.05.31.(월) | A | 남 | 과장 |
| 2차 | 경기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 | 2021.06.02.(수) | B | 여 | 과장 |
| 3차 | 경기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 2021.06.04.(금) | C | 남 | 과장 |
| 4차 | 경기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 | 2021.06.07.(월) | D | 여 | 과장 |

II 코로나19 상황에서 노인학대 발생 현황

■ 노인학대 의심신고 및 학대판정 건수

- 노인학대 신고 접수는 2018년 2,515건에서 2019년 2,445건, 코로나19가 유행한 2020년 2,593건으로 소폭 증가함
 - 노인학대가 의심된다고 신고된 건수는 코로나 이전(2018년과 2019년)과 코로나 중(2020년)에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 하지만, 학대의심 신고 중 노인학대 사례로 판정된 경우는 코로나19가 유행한 2020년에 급증함
 - 2018년 노인학대로 판정된 경우는 901건이었지만, 2019년 914건, 2020년 1,194건으로 증가. 코로나19가 유행한 2020년에는 전년대비 280건이 증가하여, 2018년 대비 2019년 증가건수인 13건의 약 21배가 증가하였음
 - 노인학대의 증가비율은 2018년 대비 2019년에는 1%p 증가한 것에 비해 코로나19 상황인 2020년에는 전년대비 30%p나 급증
 - 노인학대신고 건수 대비 학대판정 건수의 비율을 분석해 보면, 2018년에는 노인학대 신고 중 노인학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35.83%로 신고건수의 약 1/3이 노인학대로 판정되었음. 하지만, 2020년에는 전년대비 10.22%p 증가한 46.05%로 급증하여 신고건수대비 약 절반가까이 노인학대로 판정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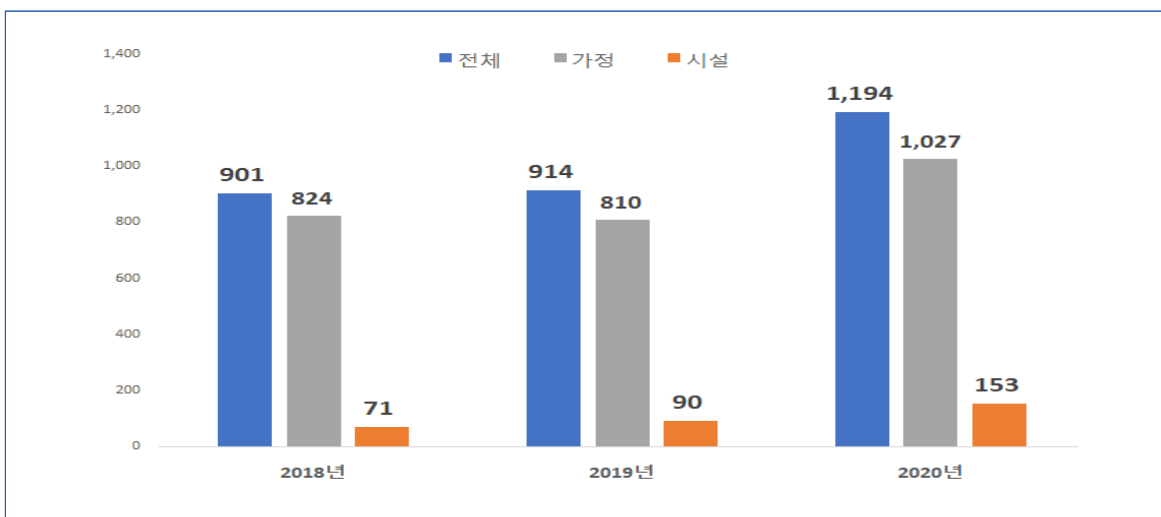
〈그림 1〉 노인학대 신고건수·학대판정건수·신고대비 학대판정비율 변화



■ 노인학대 발생 장소

- 노인학대의 발생 장소를 분석해 보면, 가정학대와 시설학대 모두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증가하는 가운데, 2020년 코로나19 상황에서 시설학대가 급증함
 - 가정학대는 2018년 824건, 2019년 810건, 2020년 1,027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가정학대의 발생건수는 2018년에 비해 2019년에는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824건→810건), 2020년 코로나19 상황에서는 217건이나 증가하여 12.36%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시설학대 또한 2018년 71건, 2019년 90건, 2020년 153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코로나19 상황인 2020년에는 시설학대의 증가폭이 76%p나 급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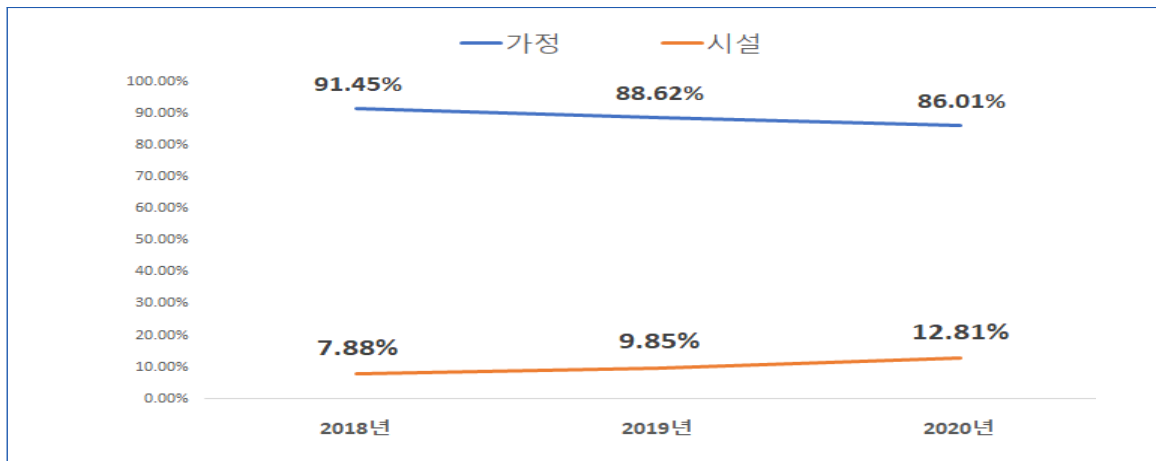
〈그림 2〉 학대발생장소의 연도별 발생 건수 변화



- 전체 노인학대 중 가정학대와 시설학대의 발생 비율을 분석해 보면, 가정학대 비율은 감소하는 반면 시설학대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전체 노인학대발생 건수 중 가정학대의 발생비율이 2018년에는 91.4%, 2019년에는 88.62%, 코로나19 상황인 2020년에는 86.01%로 나타나 시설학대보다 발생건수 자체는 많으나, 그 발생비율은 시설학대에 비해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반면에 전체 노인학대발생 건수 중 시설학대의 발생비율은 2018년에는 7.88%, 2019년에는 9.85%, 코로나19 상황인 2020년에는 12.81%로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남

- 코로나19 상황에서 가정학대와 시설학대의 발생비율이 변화된 것은 시설학대가 많이 발생되었기 때문인 것을 원인으로 찾을 수 있음
 - 코로나19 상황에서 시설학대가 증가한 것은 인구고령화로 인한 시설수 자체가 증가하면서 자연스럽게 시설입소 노인의 증가와 함께, 코로나19에 따른 면회제한 등으로 종사자의 학대 민감성 감소 등이 원인으로 추측됨

〈그림 3〉 전체학대 중 가정학대와 시설학대의 비율 연도별 변화



- 시설학대가 가장 많이 나타난 장소는 노인장기요양시설로 나타남
 - 시설 학대 중 가장 많이 발생한 장소는 노인장기요양시설로, 노인학대발생 건수는 2018년 65건, 2019년 90건이었다가 코로나19 상황인 2020년 145건으로 급증하여 전년대비 61%p나 급증함
 - 2020년에 발생한 전체 시설학대(157건)의 92.35%인 145건이 노인장기요양시설에서 발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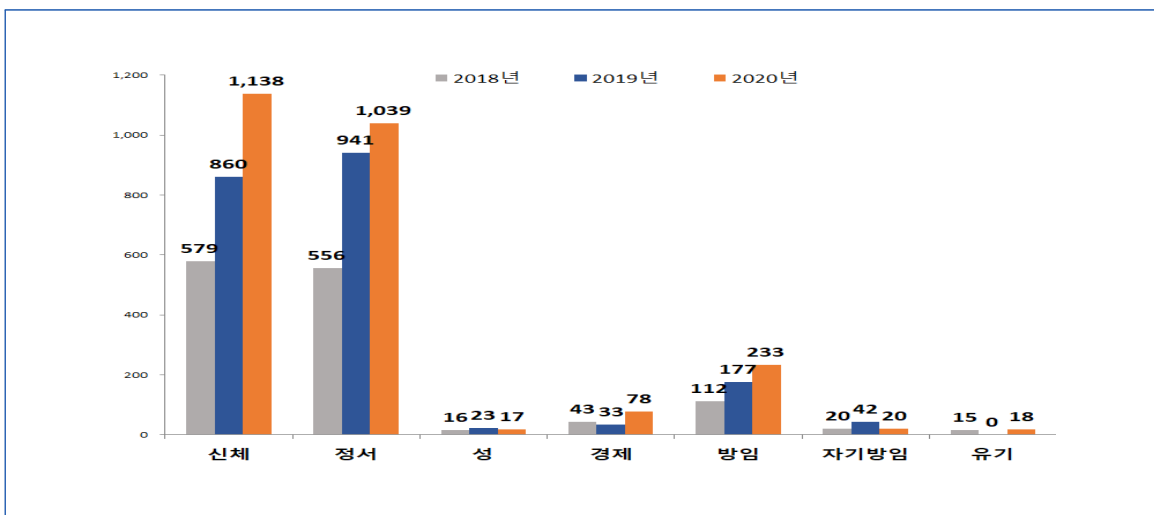
■ 노인학대 유형²

- 코로나19 상황인 2020년에 발생한 노인학대를 유형별로 분석해 보면, 신체학대와 정서학대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남

2 노인학대유형은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성희롱 등의 행위,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폭언, 협박, 위협 등으로 노인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로 구분해 볼 수 있음

- 노인학대유형은 1개 사례에서 2개 이상 중복될 수 있기 때문에 2020년 기준으로 전체 발생건수(1,194건) 보다 많은 2,543건이 보고됨
- 2020년 기준으로 분석해 볼 때, 신체 학대(1,138건)가 전체(2,543건)의 44.75%를 차지하여 가장 많이 발생되었으며, 그 다음으로 정서적 학대(1,039건)가 전체(2,543건)의 40.8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그 외 성학대의 비율은 0.60%, 경제 학대 비율 3.06%, 방임 비율 9.10%, 자기 방임 0.78%, 유기 0.70%로 나타남
 - 신체학대: 2018년 579건, 2019년 860건, 2020년 1,138건 발생
 - 정서학대: 2018년 556건, 2019년 941건, 2020년 1,039건 발생
 - 성학대: 2018년 16건, 2019년 23건, 2020년 17건 발생
 - 경제학대: 2018년 43건, 2019년 33건, 2020년 78건 발생
 - 방임: 2018년 112건, 2019년 177건, 2020년 233건 발생
 - 자기방임: 2018년 20건, 2019년 42건, 2020년 20건 발생
 - 유기: 2018년 15건, 2019년 0건, 2020년 18건 발생

〈그림 4〉 학대유형별 연도별 발생 건수 변화



- 연도별 변화 추이를 보면, 여전히 신체학대와 정서학대가 가장 많이 발생한 가운데 코로나19 상황에서 발생한 1순위 학대 건수는 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연도별 발생건수를 분석해 보면, 2019년에는 정서학대-신체학대-방임학대 순으로 나타났으나, 2020년 코로나19 상황에서는 신체학대-정서학대-방임학대 순으로 학대 발생 건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연도별 학대유형별 증감 추이를 분석해 보면, 경제학대가 전년대비 두배 이상 증가하여 가장 높은 증가 추이를 보인 반면, 자기방임은 오히려 절반으로 줄어 들
- 노인학대유형 중 경제 학대가 전년대비 130% 급증하여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음

〈그림 5〉 노인학대유형별 연도별 증감 추이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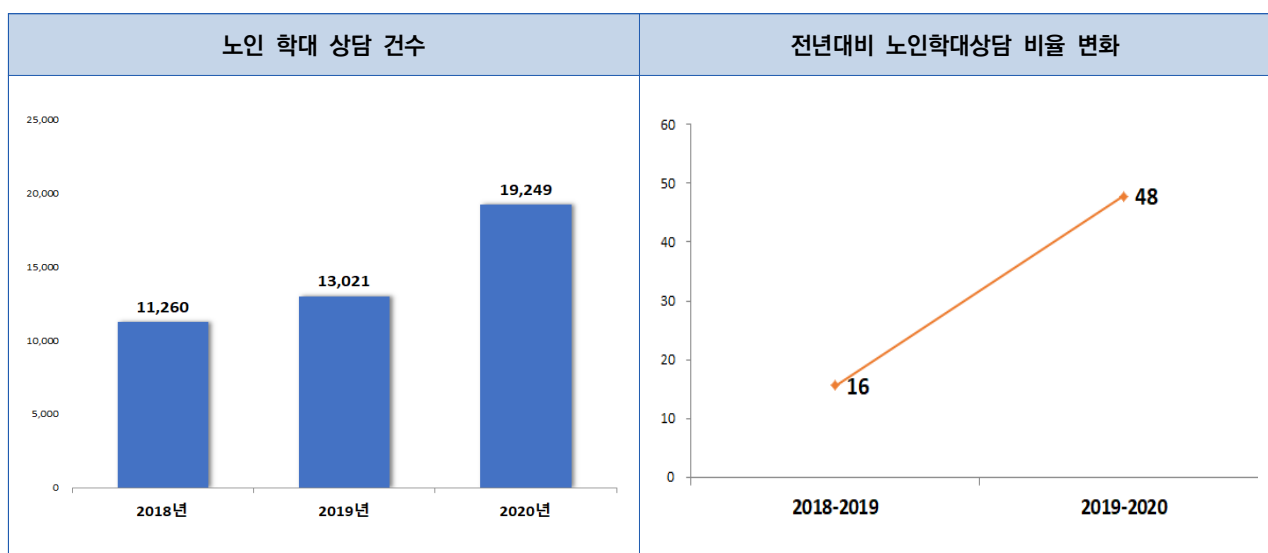


- 학대유형별로 증가한 비율을 보면, 신체 학대는 전년대비 3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방임은 전년대비 31% 증가했으며, 정서학대는 전년대비 1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또한 유기의 경우 전년대비 18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반면에 발생 비율이 감소한 노인학대로는 성학대가 전년대비 30% 감소했으며, 자기방임은 전년대비 5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 노인학대 발생 유형은 신체학대와 정서학대가 가장 많은 발생하는 가운데, 코로나19 감염병 상황에서 경제학대가 2배 이상 큰 폭으로 증가함
- 코로나19 상황에서 신체학대와 정서학대가 가장 많이 발생되었으며, 특이한 점이 경제학대가 다른 학대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는 점임
 - 이는 외출도 못하고 가족 방문도 피하는 생활로 집에 감금된 상태의 노인들이 신체활동 저하뿐 아니라 경제적 압박을 겪는 자녀로 인한 재정 착취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노인학대 상담

- 코로나19 상황에서 노인학대 건수가 증가한 만큼 노인학대 상담 건수도 급증함
- 2018년에는 학대상담 건수가 11,260건, 2019년에는 13,021건으로 증가추세가 완만하였으나, 코로나19 상황인 2020년에는 19,249건으로 6,228건이나 급증함

〈그림 6〉 노인학대 상담 건수의 연도별 변화 및 전년대비 상담건수 비율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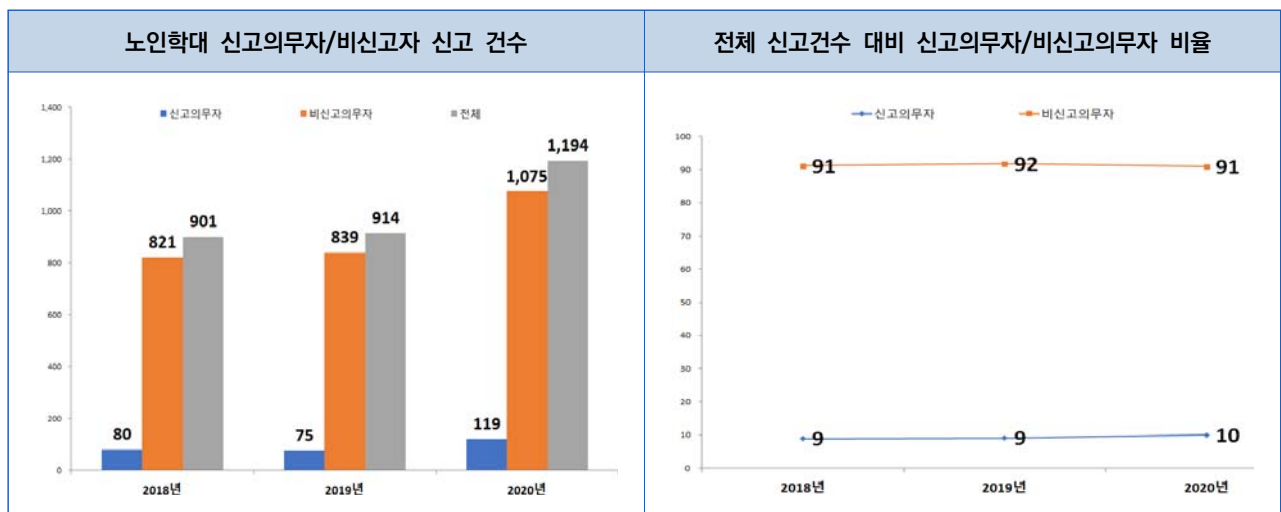


- 노인학대상담 건수의 증가비율을 분석해 보면, 2018년 대비 2019년에는 15%p 증가한 반면에, 코로나19 상황인 2020년에는 전년도 대비 48%p나 급증함. 이는 코로나19상황에서 노인학대 건수 자체가 많이 발생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 지난 3년간(2018-2020년) 노인학대 신고는 비신고의무자의 신고건수가 신고의무자의 신고건수보다 10배 많이 신고한 것으로 나타남

- 노인학대 신고의무자³가 신고한 건수는 지난 3년간 총 3,009건 중 274건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신고의무자⁴가 신고한 건수는 2,735건으로 나타나 전체 90.89%를 비신고의무자가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음. 이는 일반 사람들의 노인학대에 대한 민감성이 높아졌기 때문인 것을 그 원인으로 볼 수 있음
- 신고의무자와 비신고의무자의 비율의 변화는 연도별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7〉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 신고 건수 변화 및 전체 신고건수 대비 신고의무자·비신고의무자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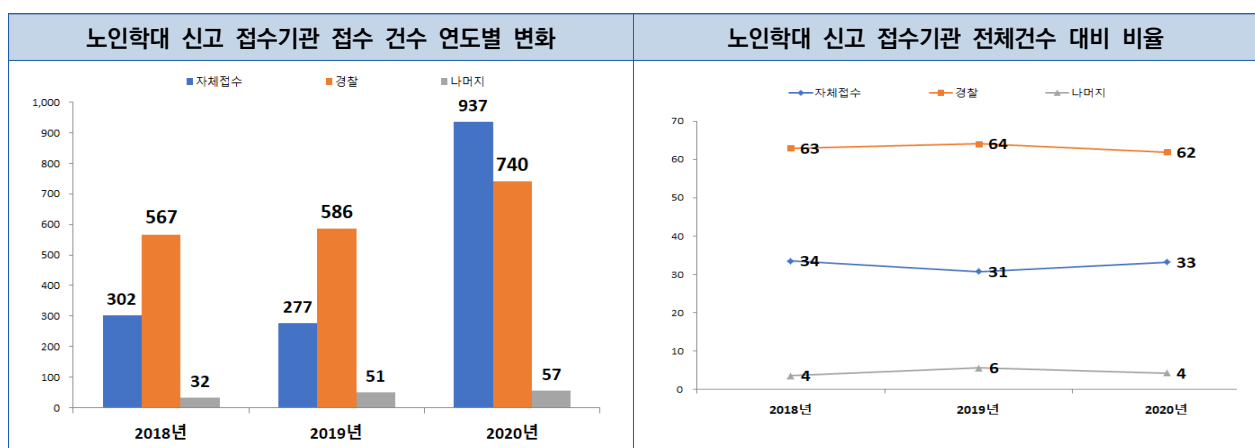
-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는 그 직무상 노인 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하며(노인복지법 제39조의6 제2항), 신고의무를 위반하여 신고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3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있고(제61조의2), 이에 신고의무자 자격취득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내용”을 포함하도록 되어있다.(제39조의6 제4항)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는 1) 의료기관,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으로 분리하는데 의료기관인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이며, 의료인으로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이다. 2)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의 모든 직원이 포함하는데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이 포함된다 3)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인 관련 일에 종사하는 모든 직원으로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종사자들도 포함된다. 4) 그 외 노인복지상담원 및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피해자 보호시설의 모든 직원, 사회복지관, 부랑인 및 노숙인보호시설의 모든 직원, 장기요양기관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의 모든 직원, 119구급대의 구급대원, 건강가정지원센터 모든 직원들이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이다.
- 비신고의무자 대상은 1) 관련기관: 어르신지킴이단, 경찰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기타 관련기관 종사자 등, 2) 친족: 배우자, 아들, 며느리, 딸, 사위, 손자녀, 친척 등 3) 타인 : 기타 타인, 동거인, 이웃, 익명, 친구 등

- 신고의무자 중에는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가장 많은 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남
 - 노인복지시설종사자: 2018년 20건, 2019년 27건, 2020년 55건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2018년 45건, 2019년 21건, 2020년 19건
- 비신고의무자 중에서는 관련기관 종사자가 가장 많이 노인학대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남
 - 학대피해노인: 2018년 56건, 2019년 43건, 2020년 49건
 - 학대행위자: 2018년 0건, 2019년 0건, 2020년 1건
 - 친족: 2018년 79건, 2019년 77건, 2020년 114건
 - 타인: 2018년 18건, 2019년 22건, 2020년 12건
 - 관련기관 종사자: 2018년 668건, 2019년 697건, 2020년 899건

○ 노인학대의 신고 경로는 경찰을 통한 접수가 가장 많으며, 자체 접수가 그 다음 순으로 나타나 경찰과 자체 접수가 전체 신고 건수의 95.34%로 나타남

- 경찰을 통한 노인학대 신고 접수는 2018년 567건, 2019년 586건, 2020년 740건으로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지난 3년간 총 3,009건 중 1,893건으로 62.91%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됨
- 노인보호전문기관 자체 접수를 통한 노인학대 신고 접수는 2018년 302건, 2019년 277건, 2020년 937건으로 2019년 줄었지만, 2020년 다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체 접수는 총 3,009건 중 976건으로 전체 노인학대신고 건수의 32.43%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됨
- 129(보건복지상담콜센터)를 통한 노인학대 신고 접수는 2018년 19건, 2019년 14건, 2020년 10건으로 점차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8〉 노인학대 신고 접수기관 접수 건수 및 비율 변화



■ 노인학대 예방교육

- 2018년 이후 신고의무자와 비신고의무자 모두 노인 학대 예방 교육을 실시한 횟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신고의무자의 노인학대 예방교육 실시횟수는 2018년 228회, 2019년 189회, 2020년 92회로 2018년 대비 2020년 136회 감소
 - 신고의무자 중 노인학대 예방교육에 참여한 사람의 수는 2018년 11,879명, 2019년 9,281명, 2020년 1,675명으로 감소
 - 비신고의무자의 노인학대 예방교육 실시횟수는 2018년 272회, 2019년 244회, 2020년 118회로 2018년 대비 2020년에 154회 감소
 - 비신고의무자 중 노인학대 예방교육에 참여한 사람의 수는 2018년 13,028명, 2019년 11,331명, 2020년 3,764명으로 감소
- 노인학대 예방교육 실시 횟수가 감소한 것은 코로나19 이전에는 대면·집합으로 진행되던 교육이 코로나19로 인해 대면·집합교육이 불가했기 때문

■ 노인시설 종사자 대상 노인인권교육

- 노인시설 종사자 대상 노인인권교육 역시 전년대비 코로나19 상황인 2020년에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2018년 13,028명, 2019년 11,331명, 2020년 3,764명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노인인권교육 역시 실시 횟수가 감소한 원인은 필수교육임에도 불구하고 인권교육도 대면·집합교육이 금지된 상황이었기 때문임

Ⅲ 코로나19 상황에서 노인학대 대응 현황

■ 예년에 비해 2020년 노인학대가 급증한 원인은 코로나19 감염병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음이 지적됨

- 실무자들은 코로나19 상황에서 노인학대가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코로나19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는 것으로 분석됨

“2019년 말부터 큰폭으로 증가했어요 ... (중략)... 코로나 영향도 있는 것 같아요. 시설에 보호자가 방문을 하지 못해 오랜만에 방문을 했는데 어르신 몸에 멍이 있거나 그러면 학대한 것 같다고 하면서 신고를 하세요. 이런 식으로 신고건수가 증가하고, 신고 건수 증가는 또 학대판정 건수 증가가 되는거고..” (대상자 D)

저희는 올해부터 엄청 터지고 있어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코로나가 장기화된 영향도 있을 것 같아요..” (대상자 A)

“북부의 경우 노인요양시설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시설학대가 매우 큰 폭으로 증가되었어요.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면회가 안되니깐 종사자들이 민감하지 못하고 안일하게 대처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대상자 B)

- 실무자들은 코로나19 이후 노인학대가 증가한 이유로 시설의 면회중지와 노인학대의 인식변화가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음

“일단 코로나로 시설에서 종사자들도 안일해진 것이 있어요. 가족도 외부인도 방문이 중단 되니깐 그냥 조그마한 상처가 나면 ‘이정도 썸이야’ 하면서 넘어가요. 보호자에게 알리지 않습니다. 때리는 것만이 학대가 아니거든요.. 몸을 닦거나 이러다가 살짝 멍이 들어도 가족에게 알려야 하지만, 알리지 않고 방치하면 학대에요” (대상자 B)

“가족들도 면회 중지가 풀린 뒤에 오랜만에 어르신을 보러갔는데 몸에 상처가 있고 그러면 가족들을 못본다고 학대를 한 게 아닌가 하고 신고를 하고 있어요.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이 좋아져서, 조그마한 상처가 있어도 의심하고 신고를 하는 것 같아요. ... (중략)... 신고건수가 증가하지만 학대에 대해 일반인들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아요...” (대상자 C)

■ 코로나19 상황인 만큼 학대개입 방식 역시 변화되었음

- 코로나19 이후 노인학대 조사와 상담을 진행하는 방식에도 변화가 생겼으며, 진행방식의 변화로 인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지적됨

“가정에서 발생하는 학대의 경우 가정으로 가지 않고 밖에서 만나는 식으로 상담을 진행하고, 시설학대의 경우 시설은 방문하지만 종사자 위주로 조사를 하고 어르신방에는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 (중략)… 종사자 위주로 하다 보니깐 정확한 조사에는 어려움이 있어요” (대상자C)

“외부인원 방문이 중단된 상황에서 시설 방문을 해야하니깐.. 시설도 그렇고 저희도 .. 혹시나 코로나 나올까봐 이렇게 걱정이 되기는 하죠.. … (중략)… 외부에서 진행을 하기 위해 차량용 가림막도 샀어요.. 시설이랑 가정에 들어가지 않고 차안에서 가림막을 설치하고 상담을 하기위해서 구매했어요” (대상자 B)

“모든 손 소독제, 마스크 같은 방역물품을 다 챙겨서 방문해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깐.. 조사를 하더라도 꼭 확인해야하는 것 위주로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 나머지는 지역사회랑 연계를 하던지..어떻게든 진행은 하는데 어려움이 많아요” (대상자 A)

■ 코로나19 상황에서 노인학대 개입의 어려움 1 : 노인학대 개입 자체가 어려움

- 거리두기 지침과 행정명령 등으로 노인학대 조사와 상담 자체를 진행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실무자들은 코로나19로 노인학대 개입 자체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함

“코로나19 초반에는 방문을 안했어요. 그런데 워낙 신고가 많이 들어오니깐.. 만나갈 수가 없어요. 코로나로 조사를 중단했다가 학대어르신에게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깐.. 작년 4월부터 그냥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대상자 B)

“노인학대 지침에는 학대 신고후 72시간 내에 조사를 해야 한다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자체들 방역수칙 관련 행정명령이랑 경기도사회서비스원에서 대면 상담을 지양하라는 공문이 왔어요.. 그런데 학대 신고가 들어오면 만나갈 수가 없습니다. 빨리 조사를 하고 개입을 해야 해요.. 행정명령과 공문 이런 것을 지키다보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대상자 A)

“코로나로 학대신고가 들어온 뒤 위기개입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연계도 어렵고, 시설입소도 어렵고.. 코로나 이전에는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대상자 B)

■ 코로나19 상황에서 학대개입의 어려움 2 : 즉시분리 피해노인의 쉼터 입소

- 실무자들은 코로나19 상황에서 학대개입 시 가장 어려운 점을 쉼터 입소라고 이야기 함

“시설에 입소를 하기 위해서는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검사결과가 바로 나오는데 아니고 2~3일을 걸리다 보니깐.. 학대행위자랑 분리를 해야하는데 학대 결과가 나올때까지 이분들이 머무를 곳이 없어요” (대상자 A)

“특히, 주말이나 야간에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 더 큰 문제예요. 검사를 안하거든요.. 연고자가 있는 경우 다른 보호자가 맡아주면 되지만, 무연고자의 경우나 가족과 연락이 안되는 경우에는 아예 머무를 곳이 없어요.” (대상자 B)

“임시쉼터로 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요. 시설의 위험부담이 크고, 그렇다보니깐 시설들에서 거부를 하는 경우가 많고.. 지자체별로 임시 쉼터로 사용할 시설을 정해야하는 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알고 있는 사람이 없을거예요.. 2012년인가..2013에 만들어졌을거라...” (대상자 C)

“해당 지역에서 시설 입소가 어려운 경우 타지역으로 입소를 하는데.. 받아 줄 이유가 없어요.. 주소지가 우리 지역이 아닌데 왜 받아주냐는 식이죠.. 각 주무관끼리 학대에 관심이 많고, 소통이 잘되서 입소를 도와주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 (대상자 B)

■ 코로나19 상황에서 학대개입의 어려움 3 : 종사자 업무 과중

- 코로나19 상황에서 노인학대 업무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인력이나 지원은 별다른 것이 없기 때문에 종사자들의 업무 과중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남

“학대가 증가하니깐 현장출동도 많고 해서 우리 시설에 2개 차량이 있는데도 워낙에 신고건수 자체가 많아서 개인차로 나가고 10명 직원이 모두 학대 현장에 나가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상자 B)

“학대가 발생하니깐 현장에 조사를 나가야 하고, 갔다와서는 조사보고서 써야 하고 업무가 정말 너무 과중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도 업무가 매우 과중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학대 건수 자체가 많아져서 종사자들의 업무가 정말 과중되는 상황입니다.....(중략)....대체인력을 지원받아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학대개입 업무가 워낙에 전문적인 업무이다 보니깐 이곳에 입사해서 2년정도 되어야 노인학대예방교육 정도를 겨우 진행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대체인력을 지원한다면 학대개입 상담 인력을 지원하는 것은 별로 도움

이 안되고 행정지원인력이나 기타 차량지원, 현재 10시간으로 제한되어 있는 초과근무수당을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것 정도가 도움이 됩니다”(대상자 B)

■ 코로나19 상황에서 학대개입의 어려움 4 : 사후관리 연계의 어려움

- 코로나19 상황에서 사회복지시설의 휴관으로 인해 사후관리 서비스 연계 제공이 더욱 어렵게 됨

“학대에서 사후관리가 중요합니다. 사례판정회의도 해야 하고 사례연계도 해야 하는데 유관기관도 코로나로 문을 다고 하다보니 연계도 지연되고 결국 피해는 어르신들이 받고 있어요.” (대상자 B)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응급개입이 주 업무이기 때문에 사례관리까지 하기에는 조직여건 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전에는 노인복지관 등 유관기관과 연계해서 어르신들이 잘 계시는지 사후관리를 진행하였었는데 그게 현재는 불가능합니다”(대상자 C)

“이번에 경기도에서 2개 기관이 공동모금회에서 별도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사례관리를 위한 별도사업을 진행하였는데, 효과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자체 사업을 추진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대상자 A)

■ 코로나19 상황에서 학대개입의 어려움 5 : 학대예방 교육

- 실무자들은 코로나19 이전에는 노인시설 종사자 대상으로 학대예방교육을 필수교육으로 진행하였으나, 코로나19 이후 이를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학대 조사뿐 아니라 학대예방 교육을 해야해요. 각 노인복지시설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해야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교육을 하기가 어려워요. 온라인으로 대체를 하기도 하는데..저희도 처음해보고, 요양보호사분들의 경우 연세가 있으신 경우도 있어서 교육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상자 C)

“노인학대 예방교육의 경우 전달교육이 가능해요. 그런데 인권교육은 수료증이 나와야 해서 전달교육이 불가능해요. 이분들이 사이버 교육을 들어야 하는데 진행이 어렵죠.. 교육의 질도 많이 떨어지고.. …(중략)… 부천시의 경우 장기요양시설협회가 있어서 도움을 주지만 없는 시의 경우 어려움이 많아요..” (대상자 B)

IV 정책 제언

■ 코로나19 감염병 상황에서 노인학대가 급증하는 현상을 고려할 때, 노인 보호전문기관의 적극적인 지원책 필요

- 감염병 상황에서 노인학대 감소 및 예방을 위한 한시적 지원책 필요(행정인력 파견 등)
 - 노인학대의 증가는 코로나19 상황인 2020년에는 전년대비 280건이 증가하여, 2018년 대비 2019년 증가건수인 13건의 약 21배가 증가함. 그로 인해 노인보호전문기관 종사자들의 업무 과중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남
 - 학대 개입 업무가 매우 전문적인 업무로 대체인력을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학대 현장에서 개입하고 상담을 진행할 수는 없는 것으로 분석됨
- 구체적으로 감염병 상황에서 학대가 급증하는 만큼 이들이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행정지원인력 파견, 차량 지원, 추가적인 초과근무수당 지급 등 지원 필요

■ 감염병 상황에 입소할 수 있는 노인학대 피해자 임시쉼터의 운영

- 학대개입은 가정으로 복귀할 수 없는 학대 피해자를 가해자로부터 즉각적으로 분리시키는 것이 필요한데 감염병 상황인 만큼 바로 쉼터 입소가 불가능함
 - 감염병 상황에서 병원 등과 연계하여 코로나 검사 등을 신속히 진행하여 피해노인이 바로 입소할 수 있는 병원 등과 연계한 노인학대 즉시 입소 쉼터를 운영
- 수원의료원 등 도립병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학대 피해 노인의 사후관리를 위한 별도의 노인보호전문기관 사업 추진

- 코로나 상황에서 유관기관도 모두 휴원하기 때문에 학대개입 종결 노인의 사후관리를 위한 별도 사업 실시
 - 경기도 노인보호전문기관 2개소에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을 받아 학대피해노인을 대상으로 사후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경기도 차원에서 자체사업으로 학대종류 노인에 대한 사후관리 모니터링(위기단 계별) 사업을 별도로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감염병 상황에서 노인학대 예방교육 실시 등에 대한 별도의 지침 마련

- 필수교육을 대면으로 실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온라인 교육자료 제작 등 추가적인 업무로 종사자의 업무가 매우 과중된 것으로 나타남
 - 노인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노인학대 예방교육의 경우, 코로나19 이전에는 대면·집합으로 진행되던 교육이 코로나19로 인해 불가능해 집에 따라 노인학대 예방교육을 온라인으로 실시하기 위한 교육 자료 제작과 준비 등에 종사자의 업무가 과중된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인권교육의 경우 종사자별로 수료증을 발급해야 하기 때문에 비대면으로 실시하더라도 수료증 발급 등에 대한 행정적인 업무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감염병 대응 노인학대인권교육 등에 대한 적절하고 유연한 지침을 별도로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대면·집합교육을 대체할 수 있도록 동영상 강의 자료 개발 및 동영상 강의 이수 시 교육인정 지침 마련 필요

■ 시설학대 등 감염병 상황에서 많이 발생하는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도차원의 모니터링 및 유관기관 협조 강화

- 감염병 상황에서 입소시설의 면회 제한 등으로 인해 시설에서의 노인학대가 급증한 것으로 분석된 만큼, 도차원에서 노인장기요양시설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현장 인터뷰에 따르면, 감염병 상황에서는 감염 염려로 인해 노인들이 실제 생활하고 있는 입소실에 노인보호전문기관 종사자가 방문하여 노인을 조사하고 학대판정을 진행하는 것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남
 - 대신 노인보호전문기관 종사자들은 노인학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공용거실에서 노인 장기요양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조사할 수 밖에 없음. 때문에 조사에 제한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감염병 상황에서는 현실적인 제약이 있는 만큼 노인학대판정을 위해서 도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병원, 경찰, 금융기관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강화할 수 있도록 도차원에서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함
 -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이 사회 전반적으로 높아지면서 경찰·병원과 같은 유관기관 종사자들이 학대에 민감하게 반응함
 - 하지만,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적 상황에서 경제학대가 전년대비 급증한 것을 볼 때, 금융기관 등에 대해 노인학대 인식개선 교육 및 유관기관 협조를 도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강화하고 유도할 필요가 있음

참고문헌

- 경기노인보호전문기관(2021). 2020 경기도내 노인보호전문기관 사업운영보고서 및 상담사례집. 수원: 경기노인보호전문기관
- 유병선(2016). 경기도 노인학대 실태와 대응 방안. G-Welfare Brief. 수원 : 경기복지재단
- 유병선·이민아·장백산(2020). 포스트코로나 시대 노인복지시설 서비스 구축 방안 연구, 정책연구보고서 2020-19. 수원: 경기복지재단
- Levin, A., Hanage, W., Owusu-Boaitey, N., Cochran, K., Walsh, S., & Meyerowitz-Katz, G. (2020). Assessing the age specificity of infection fatality rates for COVID-19: Systematic review, meta-analysis, and public policy implications. *European Journal of Epidemiology*, 35, 1123-1138.
- Levkovich, I., Shinan-Altman, S., Essar Schwartz, N., & Alperin, M. (2021). Depression and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among elderly patients during the COVID-19 pandemic in Israel: A cross-sectional study. *Journal of Primary Care & Community Health*, 12, 1-8.
- Wang, C., Pan, R., Wan, X., Tan, Y., Xu, L., Ho, C., & Ho, R. (2020). Immediate psychological responses and associated factors during the initial stage of the 2019 coronavirus disease (COVID-19) epidemic among the general population in China. *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 17(5) [doi:10.3390/ijerph17051729]

경기복지재단 복지이슈 FOCUS 2021-07

코로나19 감염병 상황에서 노인학대 대응 이대로 좋은가

발행일 2021년 6월

발행인 진석범

발행처 경기복지재단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150(파장동 179) ☎ 16207

Tel. 1577-4312 Fax. 031-898-5937

Homepage. ggwf.gg.go.kr

